

2021년 회계연도 분기별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- 일 자 : 2022. 6. 15.(수)
- 장 소 :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
- 안 건
 1. 2021년 회계연도 1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
 2. 2021년 회계연도 3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

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

2021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제3항에 따라,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2021년 예비비 사용내역 : 372,447,050원

※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예비비를 재배정 받아 집행함('21.2.16. 지출)

공사개요

- 공 사 명 : 신청사 건설공사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- 규 모 : 지하5층/지상13층, 연면적 90,788 m^2
- 공사기간 : 2006.5.15.~2013.2.15.
- 공 사 비 : 2,758억원
- 시 공 사 : 삼성물산(주), 에스케이건설(주), 쌍용건설(주)

소송개요

- 사 건 명 : 신청사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
- 원 고 : 삼성물산(주)외 2
- 피 고 : 서울특별시
- 청구금액 : 537.2억원
 - 1) 기본설계비(2차~6차), 실시설계비(1차 기본설계) : 114.4억원
 - 2) 총 공사기간 1,208일 연장에 따른 간접비 : 120.8억원
 - 3) 공사중지기간 298일 동안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: 77.5억원
→ 공사 중지 사유 : 문화재 심의 지연('06.5.15.~'07.3.23.)
 - 4) 본관동 리모델링 추가 설계비 : 14.1억원
 - 5) 2,3차 기본설계안에 대한 합의단가 적용 금액과의 차액 : 166.4억원
 - 6)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, 단가조정 공사비 : 42.1억원
 - 7) 벽면녹화 농장계약기간 연장 지출 : 1.9억원
- 재 판 부 : 대법원(1심: 서울중앙지방법원, 2심: 서울고등법원)

- 사건내용 : 우리시에서 발주하여 공사완료한 신청사 건립공사의 시공자인 원고가 원고측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지출, 공사기간에 따른 간접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

1심 판결('16.11.14.)

- 피고는 원고 삼성물산에 24,554백만원, 에스케이건설에 14,732백만원, 쌍용건설에 9,821백만원과 가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

2심 판결('20.01.09.)

- 1심 판결에 따라 우리시가 가지급한 약651억원(판결금 491억원, 이자160억원) 중 106억원을 반환하여야 함
 - '20.01.08. 기준, 반환 지연시 연12%의 이자가 가산됨

3심 판결('20.06.04.)

- 설계회사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설계비에 대해서 청구 권한이 원고인 시공사에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
 - 결과 : 상고 기각

소송비용 확정결정('20.11.17.)

- 주 문 : 신청인(삼성물산 외2)들과 피신청인(서울특별시) 사이의 공사대금 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와 같음을 확정한다

○ 상환금액 계산내역 (총액368,693,202원)

구 분	비 용 액		상환금액 (* 이자 별도)
	신청인	피신청인	
본안비용(a)	금1,381,306,393원	금175,425,974원	□ 상환액 합계(삼성+에스케이+쌍용) : 금368,693,202원 .삼성: 금193,113,863원 = 210,656,460-17,542,597 .에스케이: 금108,854,508원 = 126,397,105-17,542,597 .쌍용: 금66,724,831원 = 84,267,428-17,542,597
신청비용(b)	금9,307원	금0원	
합 계(a+b)	금1,381,315,700원	금175,425,974원	
상대방 부담비용	·삼 성: 금210,656,460원 ·에스케이: 금126,397,105원 ·쌍 용: 금 84,267,428원	각 금17,542,597	

예비비 지급('21.02.16.)

- 지급금액 : **금372,447,050원**[상환금액+이자 연5%(민법제379조)]

진행사항 : 소송종결

2021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
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제3항에 따라,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□ 2021년 예비비 사용내역 : 219,260,799원

※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예비비를 재배정 받아 집행함('21.8.23 지출)

□ 공사개요

- 공 사 명 :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공사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0-6 외 5필지
- 규 모 : 지하3층/지상1층, 연면적 2,998.23 m^2
- 용 도 : 문화 및 집회시설(서울도시건축박물관)
- 공사기간 : 2016.10.19. ~ 2018.12.30.
- 공 사 비 : 11,767,217,000원
- 시 공 사 : (주)양광건설, (주)신성종합건설

□ 소송개요

- 사건번호 : 2020가합521589
- 원 고 : 신성종합건설 주식회사
- 피 고 : 서울특별시
- 청구금액 : 222,367,214원(당초 223,002,319원)
- 재 판 부 : 서울중앙지방법원
- 사건내용 : 우리시에서 발주하여 공사완료 한 세종대로특화공간조성공사의 시공자인 원고가 원고측이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증가 등에 따른 간접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
 - 1차수 공사기간 연장 : 증 249일 (3회 계약변경)
 - '16.10.26. ~ '17.4.25. → '16.10.26. ~ '17.12.23.
 - 연장사유 : 동절기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 중지, 서울시의회 건물 정밀 안전진단, 상수도 이설에 따른 기간 소요

판결결과(1심 판결 : '21.5월 화해권고 결정)

- 위 사건의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14,900,000원을 지급한다.

예비비 지급

- 지급금액 : 금219,260,799원

(‘21.8.23.자 지급기준, 단위 : 원)

구 분	신성종합건설(주)	계	비고
원 금	214,900,000	214,900,000	확정결정액
이자(예정액)	4,360,799	4,360,799	· 연12%(화해권고결정문) · 181.7백만원*0.12%/365*73일 = 4,360,799원
합계(지급금액)	219,260,799	219,260,799	

※ 소송인지대, 수입료 등 각종 소송제비용에 대해서는 법률지원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

진행사항 : 소송종결